



양도소득세

#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어디로?

글 | 정태화 세무사

## 1.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장은 그 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서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사장은 전년도내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1)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2)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3) **이월공제 대상세액** :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세제한특별법상)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②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 2) ③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④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 공제(제10조의 2) 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⑥ 특허권 등 취득 시 세액공제(제12조 2항) ⑦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⑧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⑨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⑪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 8) ⑫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12조 2항)

※ 최저한세제도란 : 조세정책 목적 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 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소득의 경우 산출세액의 35% 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다.

## 2.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라.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 말 주 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나?

1)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 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

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내용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 물론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 대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의 신고를 하며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 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을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3)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 : 중간예납기간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전에 휴·폐업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아니하며, 6월 30일 이후에 폐업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시부과 받았거나, 폐업한 사업에 대하여 결산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시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징수 하지 않습니다. ❖